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81
----------	-----

2017. 9. 11. (월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7년 8월 21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8월 30일

(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조례명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을 “어린이집”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: 조례명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함
- 조례명 변경에 따라, 제1조,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함(안 제1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
- 제2조의 제목 “(정의)”를 “(적용범위)”로 변경하여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제6조의 사용료 면제 및 감액 사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”으로, “유치원 및 학교”를 “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”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제1호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명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변경하고,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대상을 ‘어린이집’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의 의미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에 ‘어린이집’을 포함시킨 것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 제2항(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)에 비추어 볼 때 개정목적 및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 인원이 증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, 시행 전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지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실제 해당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당기관에서 행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간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입법예고 접수의견 : 【별첨자료 1】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본청”이라 한다)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(이하 “직속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, “공공기관”을 “해당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”으로, “유치원 및 학교”를 “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청 <u>공공기관</u>의 시설·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<u>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본청”이라 한다)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</u>을 말한다. 제3조(사용대상) ① <u>공공기관</u>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, 교직원복지,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(생략)	<u>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-- <u>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</u>----- ----- -.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<u>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본청”이라 한다)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(이하 “직속기관 등”이라 한다)</u>에 대해서 적용한다. 제3조(사용대상) ① <u>직속기관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·설비 일부를 교직원·기관·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5조(실비 징수)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,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, 평생교육, 각종 행사 등으로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숙박비, 식비, 교재비, 재료비, 연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실험기구, 교구,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등을 제작·공급 하는 때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유치원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아 또는 학

③ 직속기관 등-----

-.

제5조(실비 징수) ① 직속기관 등-----

--해당 기관-----

-----.

②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) ①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1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----- 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-----

생 관련 교육 행사

2. · 3. (생 략)

4. 공공기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

5. · 6. (생 략)

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,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및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.

1. ~ 6. (생 략)

제8조(시설·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) ① 공공기관의 시설·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, 사용조건,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,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운영 및 시설·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직속기관 등-----

-- 직속기관 등---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②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시설·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) ①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②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<개정 2011.6.7.>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6.7., 2011.8.4., 2016.2.3., 2017.3.14.>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“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[제목개정 2011.6.7.]

【별첨자료 1】

입법예고 접수의견

(의견 제출기관: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세입재산담당)

※ 도내 지방자치단체 감면현황 및 건의사항

○ 도내 지방자치단체 감면현황

구분	감 면 대 상	
청주	- 국가 또는 도·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 행사 -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-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·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-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	
충주	전액	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-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 -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
	반액	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제천	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- 비영리목적으로등록된문화예술단체가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-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 - 특수학교 및 초, 중, 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-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	

구분	감 면 대 상	
영동	전액	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- 노근리사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할 경우 -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	30%	-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 - 군 자매결연 기관·단체가 사용할 경우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은 각 시·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,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이 시·군마다 상이하므로, 어린이집, 유치원, 특수학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따른 문화시설, 청소년시설 사용시 감면대상을 교육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준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